

# 예산총칙

2019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3,799,226	17,513,977
일반회계	518,909,232	15,567,277
특별회계	64,889,994	1,946,700
공기업특별회계	52,274,180	1,568,225
공영개발특별회계	7,845,437	235,36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3,202,135	696,064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1,226,608	636,798
기타특별회계	12,615,814	378,474
지하수관리특별회계	316,918	9,508
학교급식지원센터특별회계	4,130,789	123,924
의료급여특별회계	303,622	9,109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86,000	2,580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74,706	5,241
농공산업단지특별회계	2,659,828	79,795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271,922	38,158
수질개선특별회계	3,571,029	107,13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1,000	3,03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이월사업비는 별첨과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733,294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12,4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7 조 (재원구분) 의존재원에 대한 약어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고보조금(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 기금(기), 도비보조금(도), 특별교부세사업(특), 시군조정교부금등(조)